



화성파크드림 **공주월송**

일반공급(가점제)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제출

※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1.14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반드시 '상세'로 발급받으시기 바람.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서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반드시 "상세"로 발급받으시기 바람.

구분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무주택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등	본인	• 견본주택에 비치
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
	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)
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(2022.01.14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해당자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등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	• 피부양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 야 하는 경우 •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(2022.01.14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)
	병적증명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• 단신부임을 입증하는 서류(출장명령서,비자 발급내역 등)
가점제 필요서류 (해당자)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직계존·비속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 발급 •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 ※ 직계존속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 등재된경우 직계비속: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 등재된경우
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,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(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)
		손자녀	•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직계비속		•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
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	※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		
	위임장	본인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/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발급분에 한함, 대리발급분은 절대불가 (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)
	대리인 신분증 / 인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